

# 청렴인재 양성 및 교육현장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

경상남도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(이하 '양 기관'이라 함)는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과 교육현장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,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과 교육현장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양 기관 간 상호 협력 관계를 긴밀히 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신의성실) 양 기관은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에 따라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한다.

제3조(협력사항)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며,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.

1. 초·중·고등학생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
2. 초·중·고등학생 대상 청렴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활용
3. 교육 재정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 강화
4.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 개선 노력
5. 그 밖에 양 기관 간 협력·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

제4조(협약의 효력 등) ① 본 협약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하며,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.

② 본 협약의 내용은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③ 본 협약의 종료 이전에 상호 간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협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④ 본 협약 체결 후 각 기관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등 주요한 변동 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·의무는 포괄 승계된다.

제5조(비밀 보장) 양 기관은 본 협약에 따라 상대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, 협약 사항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공개되지 않은 상대기관의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,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.

제6조(기타)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간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.

제7조(협약서의 작성 및 보관)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며, 각각의 협약서는 원본의 효력을 갖는다.

2025년 7월 14일



교육감 박종훈



국민권익위원회

위원장 유철환

